

악세스권과 독자투고

박기순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독자투고란 독자가 서신을 통해서 자기의 의견, 판단, 신념 등을 신문에 게재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미국에서 최초로 악세스권을 주창하고 나섰던 배런(Jerome A. Barron)은 악세스권의 3 가지 종류로서 의견광고, 반론권, 독자투고를 들고 있다. 독자투고도 악세스권의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배런은 특히 경제적으로 의견광고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독자투고란에 의한 공정한 피드백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문헌에서는 일반적으로 access 를 악세스로 표기하고 있기에 편의상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사실은 액세스라고 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I. 머리말

대인적 커뮤니케이션에서는 피드백이 직접적이고 빠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터와 수용자가 비교적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대중들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스커뮤니케이션에서는 피드백이 간접적이고 지연적이기 때문에 대인적 커뮤니케이션에서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바랄 수 없다.

따라서 매스 · 커뮤니케이션은 수용자가 시간적으로 혹은 공간적으로 커뮤니케이터와 대등한 입장에서 피드백을 시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불공평한 커뮤니케이션임을 말할 필요조차 없다.

매스 미디어의 수용자들은 매체로부터 받은 보도내용이나 혹은 매체 자체에 대해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발표하려고 해도 이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통로(access)가 없는 것이다. 매스 미디어 소유자와 수용자 사이의 이 같은 커뮤니케이션 갭은 자유주의 경제체제하에서 매스 미디어가 독점화, 집중화, 거대화함에 따라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매스 미디어는 수용자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수용자는 매스 미디어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피드백문제는 매스 미디어 소유자와 수용자가 공동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문제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제국의 대중매체 수용자들은 오늘날 자신의 피드백을 위해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소위 액세스권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독자투고자들과 일반 구독자들 사이에서 액세스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입법상 혹은 관례상 법적인 권리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팽원순 교수가 1978 년 최초로 액세스권에 관한 개념을 소개한¹⁾ 것으로 알고 있다, 팽교수는 액세스권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권리상의 문제라기보다 언론자유 의 전통적인 관념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는 점에서 특히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액세스권에 대한 논의나 연구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좀 더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II. 정의와 이론적 배경

1. 액세스권과 독자투고의 정의

악세스권은 매스 미디어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일반대중이 신문·방송 등 매스 미디어에 자유롭게 접근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발표하기 위해 매스 미디어를 이용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악세스권에 대한 정의는 아직 논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본의 堀部政男은 여러가지 다른 해석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있다 : (1) 매스 미디어에 대한 일반대중의 권리 전반을 악세스권이라고 이해하는 방향, (2) 매스 미디어에 대한 일반대중의 비판요구 등을 악세스권으로 파악하는 것, (3) 매스 미디어에 대한 일반대중의 참여를 악세스권으로 보는 입장, (4) 일반대중의 매스 미디어운동(독자나 시청자운동)의 이념으로 보려는 경향, (5) 일반대중에게 개방된 매스 미디어를 기본이념으로 삼으려는 것, (6) 매스 미디어의 내부적 자유의 한 이념으로 이해하는 것.²⁾

한편 독자투고란 독자가 서신을 통해서 자기의 의견, 판단, 신념 등을 신문에 게재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미국에서 최초로 악세스권을 주창하고 나섰던 배런(Jerome A. Barron)은 악세스권의 3 가지 종류로서 의견광고, 반론권, 독자투고를 들고 있다.³⁾

독자투고도 악세스권의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배런은 특히 경제적으로 의견광고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독자투고란에 의한 공정한 피드백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독자투고의 악세스권적 개념에 대한 두 가지 접근방법

악세스권 개념의 생성배경에 따라 독자투고를 헌법보장설과 계약설의 두 가지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다.

(1) 헌법보장설

악세스권을 새로운 법적 권리로서 인식하도록 맨 먼저 제의한 사람은 하버드대학 출신의 헌법학자이며 매스 커뮤니케이션 법학자인 배런(Jerome A. Barron)이었다.

그는 1967년 하버드대학 법률평론(Harvard Law Review)에 발표한 논문 「Access to the Press—A New First Amendment Right」에서 미국 수정헌법 제 1 조가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에 대해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가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매스 미디어의 자유만을 보장하는 것으로 여겨왔지 일반대중의 표현의 자유도 보장하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아왔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소위 「사상의 자유공개시장」은 이미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반대중을 위한 새로운 표현의 광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디어에 대한 액세스권을 보장하는 법적 개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⁴⁾

배런은 미국 수정헌법 제 1 조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오직 매스 미디어의 소유자와 경영자의 자비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자체는 아주 빈약한 권리」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⁵⁾

그러한 관점에서 배런은 미국 수정헌법 제 1 조를 새로이 해석하여 그것을, 국가를 구속하는 부정적인 조항으로서 뿐만 아니라 공개토론장의 창설을 위한 적극적인 의도와 목적의 선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에 어울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배런은 액세스권을 미국 수정헌법 제 1 조에 입각한 새로운 권리로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액세스권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1) 재판소에 의한 집행, (2) 입법조치, (3) 행정조치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배런은 미국 수정헌법 제 1 조를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액세스권은 충분히 헌법적 근거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매스 미디어의 독점화·집중화·거대화는 대다수의 국민을 사실상 미디어의 소유 및 이용으로부터 배제시켜 그들을 일방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수용자의 지위에 고정시켜 버렸으며 미디어는 그들에게 획일적이고 균질화 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편향된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배런은 매스 미디어의 발달이 「미디어 경영자」라는 새로운 계급을 낳게 했으며, 미국 수정헌법 제 1 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주로 그들만의 독점물이 되게끔 되었다고 주장했다.⁶⁾

전통적인 언론자유이론은 미디어 경영자들을 보호할 뿐이며, 대중을 위한 미디어로의 접근의 길은 전혀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표현의 자유를 향유할 본래적인 주체인 국민은 미디어로부터 또 그가 원하는 정보로부터 소외되고 있으나, 미디어경영자들은 그들만이

자유로이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터로서의 특권을 독점하는 상황이 빚어지게 되었다고 배런은 지적했다.⁷⁾

매스 미디어의 독점이 표현의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한 논의는 1960 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시작된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47 년에 이른바 언론자유위원회가 「의견의 다양성과 상호교환, 사상의 시장으로의 액세스 등이 보장되었던 미국초기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지적하고, 그 결과 표현의 자유가 본래 지니고 있었던 내실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밝혔다.⁸⁾

동 위원회의 보고는 소위 신문의 「사회책임」이론을 제기했다. 이 이론은 표현의 자유가 당면한 문제를 사회적 책임에 입각한 미디어측의 자율규제에 의해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러한 자율규제가 오늘날의 액세스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큼 문제가 단순하지는 않다. 배런은 이와 같은 자율규제가 사적 검열로 변함으로써 언론 억압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고 지적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법적 책임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대중의 액세스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⁹⁾

(2) 계약설

계약설은 독자투고가 신문사와 독자 사이에 체결된 일종의 계약과 같다는 이론에 토대를 둔 것이다. 즉 독자투고란을 가진 신문들은 대개 투고란을 시작할 때 독자들의 투고를 환영한다는 사고를 게재하기 마련이며, 이와 같은 사고는 독자들의 투고를 게재하겠다는 약속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계약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계약이론을 내세운 미국의 독자투고소송사건 가운데 월 사건(Wall v. World Publishing Co.)이 있다. 1953 년 베이커 월(Baker Wall)이라는 한 신문독자는 툄사 월드(Tulsa World)라는 일간지가 그의 독자투고를 게재하지 않은 것을 계약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¹⁰⁾

그러나 법원은 30 만명의 독자를 가지고 있는 툄사 월드 지가 모든 독자투고를 게재하겠다고 명백한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자투고를 환영한다는 사고를, 독자투고를 모두 게재한다는 약속으로 볼 수 없다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월 씨의 독자투고를 신문에 게재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도 없었고 계약파기도 없었다는 판결이었다.

한편 월 씨가 문제 삼았던 툄사 월드지의 독자투고칼럼 사고는 다음과 같다.

「지면제한때문에 긴 독자투고는 게재할 수 없으므로 투고를 되도록 짧게 하십시오. 톨사·월드 지의 「자유민의 소리」 독자투고칼럼 담당자 앞으로 보낸 독자투고는 반송치 않습니다. 모든 독자투고는 투고자의 서명과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투고자가 요청한다면 신문게재시에 성명의 머릿글자를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런은 이와 같은 악세스권의 계약설을 매력있는 이론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계약법을 주무기로 사용하여 악세스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자투고를 각각 다른 독특한 투고로 간주한다면 법원은 논란을 일으킨 특정한 독자투고를 신문에 게재토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배런은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설은 반론을 제기하는 측에서 독자가 모두 자신의 투고가 게재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단점을 지니고 있다.¹¹⁾

III. 독자투고의 기능과 한계

1. 기능

독자투고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자투고는 신문과 독자 사이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를 제공한다. 즉 신문에 대한 피드백 구실을 하고있다.

둘째 독자투고는 다른 독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여론형성의 기반을 조성한다.

셋째 독자투고는 보도내용이나 사회현상에 대해 다른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그와 같은 반응을 알고 싶어하는 다른 독자들의 본능을 만족시켜 준다.

넷째 독자투고는 독자와 국가 혹은 지방의 정치행정을 잇는 「열려진 창」의 구실을 함으로써 여론정치를 돕는다.

다섯째 독자투고는 불완전한 취재량을 보완하는 구실을 한다.

여섯째 독자투고는 신문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신문보도 및 편집내용에 대한 독자의 의견이나 비평이 게재됨으로써 신문에 대한 논평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2. 한계

독자투고의 한계는 법적 한계와 신문 제작과정 혹은 특성에 관련된 한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1) 법적 한계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독자투고도 의견이나 신념의 표현인 이상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2) 신문제작과정 혹은 특성과 관련된 한계

첫째 독자투고는 피드백 현상이기 때문에 신문이 제공하는 메시지의 양과 내용에 따라 독자투고의 양과 내용도 결정된다.

둘째 신문은 자기판단에 따라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지면만큼 독자투고란에 배정하고 있다.

셋째 신문은 보통 독자투고란에 게재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투고를 받게 되므로 뉴스를 취사선택하듯이 독자투고도 취사선택하고 있다. 취사 선택시에는 물론 독자투고내용이 게재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담당자의 게이트키퍼 기준이 작용하게 된다.

1968년 뉴욕 타임즈지는 37,719 통의 독자투고를 받았다. 그 중 85~90%가 그들의 슬로건인 「인쇄하기에 적합한(fit to print)」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모두 게재하려면 135일간 매일 독자투고로만 신문을 제작해야 할 분량이었다. 결국 신문에 게재된 분량은 단지 6%에 불과했다.¹²⁾ 이와 같은 예는 독자투고의 한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IV. 한국의 독자투고 연구

한국의 독자투고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들은 주로 단순한 내용분석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1. 한국신문연구소 편집부의 조사

한국신문연구소 (지금은 한국언론연구원으로 개칭) 편집부는 1978년 12월 한달동안 서울에서 발행되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5개 신문의 독자투고란을 조사했다. 조사당시 중앙일보와 신아일보는 독자투고가 게재되어 있지 않아 조사대상에서 제외 되었다.¹³⁾

이 조사에서는 실제로 각 신문이 독자의 투고에 지면을 할애하는 정도와 투고내용을 분류함으로써 각 신문의 독자들이 투고란을 통해서 신문제작에 참여하는 정도를 살펴보았다.

성별 게재건수를 비교해 본 결과 남성독자투고가 여성보다 3배나 많았다.

조사자들은 독자투고를 세가지로 분류하여 내용을 분석했다. 첫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누었고, 둘째 투고내용이 본인에 직접 관계되는 정도에 따라 투고자 자신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과 비교적 사회적인 사항으로 나누었으며, 셋째 투고한 대상에 따라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일반사회단체 및 집단, 기타로 나누었다.

첫 번째 분류에 의한 내용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사회관계 독자투고 기사가 65.6%, 문화관계가 14.7%, 정치관계가 11.5%, 경제관계가 8.2%로 각각 드러났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관계 독자투고는 주로 국가 및 관계기관에 해당사실을 고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기사와 일반 독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기사들이었다.

다음으로 투고자에게 직접 관계되는 독자투고내용과 비교적 사회적인 사항에 관한 내용은 각각 23%와 77%를 차지하고 있어 후자가 전자보다 3 배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투고자 자신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분류된 것은 투고자가 경험한 개인적인 문제나 자신의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들이었다.

마지막으로 독자투고를 대상별로 살펴보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투고가 37.7%, 일반사회단체 및 집단에 대한 투고가 22.95%,기타가 39.35%를 각각 차지했다.

2. 정형수 씨의 조사

정형수 씨는 1979 년 2 월 한달동안 동아일보의 독자투고란인 「흐름」에 게재된 투고내용을 주제 별로 분석했다.¹⁴⁾

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제정치별로 투고내용을 분석했을 뿐 독자투고자의 성별과 직업 등은 조사하지 않았다.

조사결과 「흐름」에 게재된 독자투고는 모두 20 건으로 밝혀졌는데 이중 사회관계 투고가 13 건, 경제 4 건, 교육 2 건, 국제정치 1 건이었고 정치와 문화에 대한 투고는 1 건도 없었다.

정형수씨는 사회관계투고가 전체게재 투고량의 절반을 넘고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신문독자, 넓게는 매스 커뮤니케이션 수용자들이 자기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신변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자투고 분석결과 투고자 가운데 지명도가 높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투고자가 없는 것이 외국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런던·타임즈나 일본의 아사히신문 등 외국의 주요신문에는 지명도가 높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인사들이 투고를 한다는 것이다.

3. 윤임술 씨의 조사

윤임술 씨는 1980년 6월 한달 동안 서울에서 발행되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6개 신문의 독자투고란을 조사했다.¹⁵⁾

그가 조사대상으로 삼은 독자투고란은 경향신문의 「독자의 소리」, 동아일보의 「흐름」, 서울신문의 「독자의 편지」, 조선일보의 「민성」, 중앙일보의 「독자투고」, 그리고 한국일보의 「독자의 소리」였다.

독자투고중 문예적이거나 수상적인 것은 제외하고 고발과 요망사항에 관한 것만을 골라 각신문의 게재건수와 행수 그리고 투고내용을 분석 했다.

윤임술 씨는 1978년 12월에 조사한 바 있는 당시의 독자투고현황과 비교할 때 6개 신문의 독자투고 총 게재건수가 356%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게재건수뿐만 아니라 횟수도 대부분 증가추세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독자투고란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전면을 할애하는 신문도 있을 뿐더러 주 1회 정도이던 것이 2, 3회로 늘어났고 특히 독자논단을 설치하여 독자의 지상논전을 펼치는가 하면 특집태도도 매우 대담해졌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추세는 신문과 독자가 모두 독자투고란에 대해서 관심을 넓히고 있는 증거라고 윤임술 씨는 해석했다.

7개 항목에 걸쳐 독자투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선도)문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관공서의 대민봉사, 공해문제에 대한 시정 건의, 농어촌문제, 교통문제, 언론, 문화 등의 순서로 많았다.

언론항목은 18건중 17건이 비판적 의견이었는데 신문의 경우 사후보도보다 행정당국이 사전에 문제점을 발견,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독자투고의 형식은 대부분 건의 · 고발 · 진정형식을 취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즉 6 개 신문의 독자투고 가운데 83%가 무엇인가 개선되어야 할 사회문제를 다룬 것이었다.

윤임술 씨는 독자투고가 정기성을 띠고 게재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투고란이 기획기사로서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윤임술 씨의 조사에서는 또한 이미 게재된 독자투고를 읽은 다른 독자가 그 투고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밝히는 경우도 7.9%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윤임술 씨는 1980 년 7 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11 대 주요도시에서 발행되고 있는 14 개 신문중 독자투고란이 있는 10 개 신문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투고내용 가운데 교통문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교육, 대민봉사, 공해, 문화 등의 순서로 많음을 발견했다.

4. 이순호 씨의 조사

이순호 씨는 1981 년 1 월부터 3 월까지 3 개월간 서울에서 발행되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6 개 일간지를 상대로 독자투고란의 내용을 분석했으며, 또한 이들 신문의 독자투고 담당자와 면담을 했다.¹⁶⁾

독자투고란의 조사결과 각 일간지는 주당 1~3 회에 걸쳐 1 페이지 전면(광고란 제외)을 독자란으로 발간하고 있었다.

투고내용은 사회부조리나 행정적 과실에 대한 고발 및 의견을 주로 하는 시정촉구의 내용이 각 신문의 전체 게재 투고량 중 과반수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사회적 쟁점이 되는 문제들, 즉 언론기관에 의해 보도된 바 있는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건이나 정책 등에 관한 투고가 많았다.

한편 신문에 대한 비판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투고는 거의 없는 반면 라디오, TV, 잡지 및 영화에 대한 비평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투고들이 있어 대조를 이루었다.

이순호 씨는 이와 같이 신문에 대한 비평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독자투고가 없는 것은 한국의 독자투고가 신문의 충고자 혹은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순호 씨는 6 개 일간지 모두가 1981 년 1 월증면조치이후 독자투고란도 증면시킴으로써 독자의 지면참여 기회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순호 씨에 의하면 현재 한국신문의 독자투고란은 주로 사회고발이나 행정적 시정을 요망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리하여 정부합동민원상담실에서 이 난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즉각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독자의 고발 및 시정의 센터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6 개 신문의 독자투고 담당자들에게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들이 독자투고란의 비평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그 실천이 용이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들은 그 이유로 독자의 무관심을 지적하고 있다. 즉 독자들은 비평적 투고를 하고있지 않고, 또 신문에 대해 불평을 하거나 개선의 필요를 주장하는 독자들도 이를 서면으로 적어 보내는데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투고 담당자들은 또한 식자들은 투고를 않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여 밝혔다.

5. 이경원 씨의 조사

이경원 씨는 1982 년 1 월부터 8 월까지 8 개월간 서울에서 발행되는 6 개 일간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의 독자투고를 내용분석 했다. 또한 6 개 일간지의 독자투고 담당자에게 면접조사도 실시했다.¹⁷⁾

독자투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사회에 관한 내용이 50.2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문화 11.24%, 교육 10.56%, 경제 8.8%의 순서로 많았다. 정치, 군사, 가정, 보건, 국제정치, 기타는 모두 각각 5% 미만이었다.

이경원 씨는 독자투고가 신문에 대한 악세스권으로서 또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활발히 하고 있는가 살펴보기 위해 독자투고를 2 가지 대상별로 분석했다. 즉 신문기사에 대한 의견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그 이외에 대한 의견을 또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독자투고 내용을 분석했다.

대상별 분석결과 신문기사에 대한 의견이 5.88%, 매스 미디어 일반에 대한 의견이 5.67%, 그 이외의 의견이 88.45%로 나타났다. 결국 전체적인 매스 미디어에 대한 의견은 11.55%에 불과했다.

신문기사에 대한 의견을 다시 사건기사, 기획기사 및 칼럼, 사설, 독자투고에 대한 재투고로 분류한 결과 각각 1.50%, 2.23%, 0.30%, 1.85%로 드러났다. 이는 신문에 대한 의견중 특히 사설에 대한 독자투고가 가장 적음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일반공중이나 정부 또는 단체에 대한 의견은 전체 게재량의 88.45%를 차지했는데, 이중 행정적 과실에 대한 의견이나 시정촉구내용이 31.72%, 개인이나 일반공중에 대한 여론환기 및 각성촉구 내용이 27.90%를 차지했다.

6 개 일간지의 독자투고란은 공적인 이슈에 대한 문제는 시사성이 강한 것을 우선적으로 게재하고 있음이 조사결과 밝혀졌다.

독자투고에 게재되는 내용중에는 정부 또는 해당기관, 신문사의 답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합동민원실」에서는 신문의 독자투고란에 대한 담당자를 배치하며 각종 시정촉구나 비판에 대해 해결조치 또는 정부의 입장을 투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거나 신문지상을 통해 게재했다.

한편 이경원 씨는 1981 년 1 월부터 일간신문이 8 면에서 12 면으로 증가됨에 따라 증면조치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1982 년 1, 4, 8 월의 독자투고와 1980 년 1, 4, 8 월의 독자투고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시도했다.

분석결과 1982 년의 독자투고는 1980 년보다 1.3 배가량 증가했다. 또한 대부분의 신문은 증면 이후 1 회당 게재건수를 많이 증가시켰다.

주제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982 년이나 1980 년이나 여전히 사회에 대한 문제가 독자투고의 많은 양을 차지했다. 1982 년 사회문제에 관한 독자투고량은 전체의 50%였으며, 1980 년에는 43.45%였다.

대상별 분석에서는 매스 미디어에 대한 의견이 1982 년에 전체의 11.42%였고, 1980 년에는 이보다 적은 8.31%였다. 증면조치 이후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인 것이다.

이경원 씨는 1982 년과 1980 년의 독자투고를 비교한 결과 질적인 양상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으나, 수량적인 면에서는 1982 년의 독자투고가 빈도와 게재 건수면에서 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경원 씨는 또한 1982년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6개 신문의 독자투고 담당자에게 면접을 통한 설문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6개 신문이 대체로 1일 평균 10~20건의 독자투고를 접수하고 있고 둘째, 독자투고 담당자들은 사회, 교육, 경제, 문화의 순서대로 투고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이것은 실제 투고내용 분석결과와 일치성을 보였다) 셋째, 모두 일반적 사회문제 또는 공공문제를 우선적으로 게재하고 있으며 넷째, 사실에 관한 투고는 내용이 적절하지 못한 것이 많고, 또 사실은 신문사의 의견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때문에 적극적으로 게재하지 않고 있으며 다섯째, 시사성이 있는 공적인 이슈는 우선적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6. 이영미 씨의 조사

이영미 씨는 1983년 4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말동안 중앙일보의 독자투고란인 「광장」을 대상으로 독자투고가 신문에 입건되어 게이트키퍼인 독자투고담당자의 관문을 거쳐 실제로 지면에 나타나기까지 건수의 변화에 대한분석을 했다.¹⁸⁾

조사기간동안 input 된 투고중 건의, 진정, 고발형식의 내용이 8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시민의식고취가 9.5%, 기타가 6.8%였다.

반면 output 에 있어서는 건의, 진정, 고발형식이 91.1%의 강세를 보였다.

이영미 씨는 이처럼 건의, 진정, 고발형식의 투고가 input 와 output 양면에서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특히 output 에 있어서는 더욱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독자투고 본래의 목적이 신문을 통해 시정되어야 할 것들을 건의, 진정, 고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대상별 게이트키퍼를 살펴보면 input 된 독자투고 가운데 신문기사에 대한 의견이 4.1%, 매스 미디어 일반에 대한 의견이 7.7%, 그 이외의 의견이 88.2%이었다.

반면 output 에 있어서는 매스 미디어 일반에 대한 의견이 8.9%, 신문기사에 관한 의견이 2.2%로 밝혀져 input 율에 비해 훨씬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신문이 자기비판에 대한 수용태세가 미흡함을 암시하는 것으로 풀이되었다.

투고 주제별 게이트키퍼를 살펴보면 input 된 독자투고가운데 사회에 관한 내용이 30.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문화가 15.8%로 많았다.

그러나 output 에 있어서는 사회에 관한 내용이 20%로 드러나 input 을보다 훨씬 줄어든 반면 경제, 행정, 공해, 등은 input 을보다 다소 증가를 보였다.

투고를 투고자가 직접 경험한 사항과 미디어나 제 3 자를 통해 얻은 사항으로 나누어 게이트키퍼되는 상황을 살펴본 결과, 투고자와 직접관계 되는 내용은 67.4%를 차지하고 있어 간접적 경험에서 얻은 사항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output 에 있어서는 투고자의 직접경험에서 얻은 사항이 82.2%를 차지함으로써 input 을을 훨씬 능가했다.

V. 미국의 독자투고연구와 소송사건

1. 독자투고 연구

데이비드 그레이(David L. Grey)와 트레버 브라운(Trover R. Brown)은 1968 년 미국의 선거기간중에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 시(Redwood City)에서 발행되는 레드우드 · 시티 · 트리뷴(Redwood City Tribune)과 산 마테오(San Mateo) 시에서 발행되는 산 마테오 타임즈(San Mateo Times)의 독자투고란을 분석했다.¹⁹⁾

조사결과에 의하면 두 신문사는 편집 정책에 따라 정치적 색채를 띤 독자투고는 게재를 하지 않았다.

산 마테오 타임즈 지의 1968 년 10 월 9 일자 사설은 선거 후보들과, 주민투표에 회부된 공공 이슈들을 지지 혹은 반대하는 정치적 투고를 많이 받고 있다고 불평을 털어 놓았다.

이 사설은 또한 정치적 투고가 많기 때문에 이들 중 소수만을 선택하여 게재한다는 것은 다른 독자투고자들에게 불공평하므로 독자투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신문사의 정책이 아니라고 밝혔다.

즉 산 마테오 타임즈 지는 공공이슈에 관한 독자투고를 많이 받았으나 이를 모두 게재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모두 게재하지 않았다.

2. 독자투고와 관련된 소송사건

(1) Wall v. World Publishing Co.

1953년 베이커 월이라는 한 신문독자는 툰사 월드(Tulsa World)라는 일간지가 자신의 독자투고를 게재하는 것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²⁰⁾

월 씨의 소송제기 이유는 툰사 월드지가 독자투고를 환영한다는 사고를 게재함으로써 독자들과 일종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오클라호마 법원은 툰사 월드지가 독자투고 환영사고(社告)에 응하여 보낸 모든 독자투고를 신문에 게재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독자투고를 게재하지 않음으로써 자신과의 계약을 파기했다는 월 씨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2) Lord v. Winchester²¹⁾

1963년 보스턴 교외 윈체스터 시에 있는 유일한 신문인 더 윈체스터 스타(The Winchester Star) 지는 주민투표에 회부될 공개이슈에 대해 신문사의 입장을 사설로 밝혔다.

그런데 윈체스터 시의 한 시민이자 보스턴에서 변호사를 개업하고 있던 허버트 로드(Herbert Lord)는 윈체스터 스타지의 입장에 반대하여 독자투고를 했으나 스타 지는 게재를 거부했다.

로드는 메사추세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스타 지가 그의 독자투고를 게재토록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듬해인 1964년 로드는 이 소송사건을 대법원에까지 끌고 갔으나 대법원에서는 기각을 당했다.

배런은 이와 같은 독자투고연구나 소송사건들이 반영하는 것처럼 신문들은 그들의 입장을 반대하는 개인이나 그룹의 독자투고를 묵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신문에 명백한 게재의무를 지워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²²⁾

VI. 한국과 미국의 독자투고 비교

한국과 미국 사이의 독자투고 비교는 소수의 연구 사례를 토대로 한 것이므로 일반성을 띤 것은 아니다.

1. 독자투고자 성격

한국의 독자투고자들은 지명도나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다.²³⁾ 투고담당자들은 한국의 식자들은 투고를 읽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들은 또한 독자들이 일반적으로 무관심하고 소극적이기 때문에 비평적 투고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²⁴⁾ 독자투고 담당자들에 의하면 투고자의 생활수준은 「중하층」 내지 「면세점 이하의 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²⁵⁾

한편 미국의 독자투고자는 대다수가 「남성이고, 백인이며, 전문직업인이고, 교육정도가 높은 사람들」인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켄트 맥두갈(Kent McDougall)은 미국의 투고자들은 보통의 미국인보다 「더 보수적이고, 더 나이가 많고, 더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²⁶⁾

2. 독자투고내용

한국의 독자투고는 주로 사회적인 문제 특히 부조리나 행정상의 과실에 대한 고발과 시정촉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²⁷⁾ 따라서 진정 · 건의 · 고발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다.

미국의 독자투고내용을 밝히는 문헌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명백히 말할 수는 없으나, 한국보다는 훨씬 다양한 의견과 신념을 제시하는 내용이라고 본다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뉴욕 · 타임즈 지의 발행인 아더 쉘즈버거(Arthur Sulzburger)는 사설에 대한 반대의견을 환영한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²⁸⁾ 실제로 뉴욕 타임즈지는 사설옆에 이를 반대하는 독자투고도 게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독자투고 내용가운데는 신문의 사설을 반대하는 내용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우선 투고담당자들이 그와 같은 투고내용은 게재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나, 사설은 신문사의 의견이므로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게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품고 있다.²⁹⁾

한국의 독자투고내용은 대부분 무슨 소리를 썼는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고 우선 문맥마저 통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겨우 문장이 되어있다고 보면 또 비분강개조의 애국적인 뉘etur리에 그치는 예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⁰⁾

미국도 저질의 독자투고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월 ·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의 편집자 잭 스폴딩(Jack Spalding)은 맥두갈(Kent McDougall)의 말을 인용하며 아틀란타 · 저널(Atlanta Journal)에 독자들이 보낸 투고의 25~30%는 「외설적이고 악의에 찬」 내용이며 따라서 게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³¹⁾

3. 독자투고 게이트키퍼 기준

한국의 독자투고게재여부를 결정짓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³²⁾

(1)게재가능 : 시사성, 사회성, 타당성, 명확성, 건전성.

(2) 게재불가능 : 국시나 사시에 어긋나는 것. 명예훼손이나 모함, 단순한 개인적 신변잡기나 불만, 무분별한 비판이나 무책임한 의견, 투서를 마치 전문업처럼 하는 일정독자의 계속적인 투고.

한편 미국의 독자투고 게이트키퍼 기준은 다음과 같다³³⁾

(1) 게재가능 : 짧고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고 투고자가 책임질 수 있고 내용이 타당하고 읽기에 적합하며 다른 독자나 신문의 의견에 대한 반대의견 등.

(2) 게재불가능 : 명예훼손, 인신공격, 특정단체의 안내문으로 사용하려는 투고, 제 3자에게보내는 편지, 또는 너무 문장이 길거나 문장력이 형편없는 투고 등.

4. 독자투고와 관련된 소송사건

(1) 박효성 대 한국일보사

전화가설업자인 박효성 씨는 1982년 4월 23일 한국일보사가 독자투고를 확인하지 않고 게재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³⁴⁾

그는 한국일보사가 투고내용의 진위와 전화가설에 관한 진위를 취재하여 사실대로 다시 보도하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독자투고는 한국일보 1982년 4월 6일자 8면에 게재된 독자투고로서 「전화이전 신고를 한 후 3개월이 지나도 전화를 가설해 주지 않아 가설요원에게 일만원을 주었더니 당장 가설해 주었다. 이 같은 비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라는 내용이었다.

이 중재사건은 피신청인인 한국일보사가 중재기일에 출석치 않아 불성립되었다.

(2) Oak Beach Inn v. Beacon³⁵⁾

뉴욕 주에 있는 「오크 비치 인」이란 한 하이웨이 식당이 지방신문 바비론비콘에 의견광고를 게재하고, 부근의 하이웨이에 위험한 커브가 있는데도 관계경찰당국은 대책수립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견광고가 나온지 얼마 안되어 비콘 지는 「오크 비치 인 식당이야말로 이미 취한 운전자들에게 술을 파는 등 하이웨이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는 한 익명의 투고를 실었다.

화가 난 식당업자측은 비콘 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고 투고자와 성명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신문은 거부했다.

이 소송사건을 다룬 뉴욕 고등법원은 지난 1983년 3월 7일 독자투고는 뉴스나 마찬가지로 신문사는 그 취재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좋으며 원고는 투고자를 제소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사건은 독자투고를 뉴스로 취급한 독특한 소송사례가 되고 있다.

Ⅶ. 독자투고의 악세스권적 문제와 해결방안

악세스권의 주창자인 배런은 돈으로 의견광고를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독자투고를 통해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악세스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런은 악세스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1) 재판소에 의한 집행, (2) 입법조치, (3) 행정조치 등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은 법적 보장이라는 명목아래 국가와 법원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언론의 자유와 미디어의 독립성을 제약하게 될 수도 있다.

뉴욕 타임즈의 편집부 국장이었던 클리프턴 다니엘(Clifton Daniel)은 미디어에 대한 악세스권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시인하나 문제의 차원이 크게 과장되어있고 문제해결을 위해 제시된 법적 구제책들이 부적당하거나 비실질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신문과 독자들에게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내맡기면 적당한 해결책이 떠오를 것이라고 제안했다.³⁶⁾

사실상 매스 미디어에 대한 악세스권이 법률상의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누구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근거로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명확하게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독자가 신문에 독자투고게재를 어찌해서 당연한 법적 권리로 요구할 수 있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³⁷⁾

매스 커뮤니케이션 비평가인 Ben Bagdikian 은 신문이 자체적으로 독자들에게 보다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³⁸⁾

(1) 특정한 공공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게재하도록 때때로 신문의 전면을 할애하는 새로운 신문편집방식을 채택한다.

(2) 매일 전면을 독자투고란으로 할당한다.

(3) 언론기관의 판단과 일에 관한 불평을 조사하기 위해서 신문이나 방송국에 전문적인 옴부즈만을 임명한다.

(4) 지역사회 대표들로 구성된 지방언론심의위원회를 조직하고 매월 신문발행인과 정기적인 회합을 갖는다.

앞에서 언급한 한국의 독자투고 조사자들도 독자투고의 발전을 위해서 지면을 확대하고 고정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악세스권의 주창자들처럼 법적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지는 않다.

VIII. 맺는 말

지금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독자투고자들은 사회적 · 경제적 지위가 낮고 지적 수준도 낮은 사람들이다.

이들의 투고내용은 주로 사회문제와 관련된 건의 · 진정 · 고발 등이고 공공이슈나 미디어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은 별로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에서도 미디어소유자와 수용자 사이에 악세스권적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나 이를 활발히 논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독자투고자들이나 매스컴 학자들이 없다.

투고자들이 악세스권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일깨우기 위해서는 지식층에 있는 독자들이 적극적으로 투고에 참여하여 투고내용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독자투고란에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신문은 독자투고자들에 대한 전통적 고정관념을 없애고 신문제작에 독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태도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신문은 TV와 같은 다른 방송매체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비평란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에 대한 비행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매스 · 커뮤니케이션은 규모가 크고 미디어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터와 수용자사이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쉽게 실감할 수 없다. 그러나 단순한 대인적 커뮤니케이션 차원으로 끌어내려서 생각하면 훨씬 더 잘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편집자와 독자가 co-orientation workshop과 같은 대인적 커뮤니케이션에 공동으로 참가한다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문제해결에 전과는 다른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신문들이 독자투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점점 독자투고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독자투고란이 더욱 넓어졌다고 해서 악세스권이

더욱 보장을 받게 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액세스권은 언론의 자유와 일반 대중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주>

- 1) 팽원순, "매스 · 미디어의 액세스권에 관한 연구", 신문학보(한국신문학회), 1978, 제 11 호.
- 2) 堀部政男 : 매스미디어와 시민", 언론과 매스컴, 법학세미나(토쿄 : 일본평론사, 1978 년 3 월), p.196. 팽원순, 상계서, p.73 에서 재인용.
- 3) Jerome A. Barron, Freedom of the Press for Whom? : The Right of Access to Mass Media(Bloomington, Indiana : Indiana University Press,1973) , pp.6~7, p.44.
- 4) Jerome A. Barron,"Access to the Press A New First Amendment Right", Harvard Law Review, 80, 1967, p.1656.
- 5) 상계서, p.1648.
- 6) Barron, 전계서 (Freedom of the Press), p.5.
- 7) 상계서, p.6.
- 8) The Commission on Freedom of the Press, A Free and Responsible Press (Chicago, Ill.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1947) .
- 9) David Clark, et al., Mass Media and the Law(New York: Wiley-Interscience,1970), pp.421~461. 팽원순, 전계서, p.77 에서 재인용.
- 10) Barron, 전계서 (Freedom of the Press), pp.45~47.
- 11) 상계서, p.47.

12) Clifton Daniel, "Rights of Access and Reply", in Michael Emery and Ted Curtis Smythe, Readings in Mass Communication Concepts and Issues in the Mass Media(4th Ed)(Dubuque, Iowa; Wm. C. Brown Company Publishers,1980) ,p.86

13) 한국신문연구소(현 한국언론연구원)편집부, "투고란을 통해본 독자의 제작참여도", 신문과 방송, No.99, 1979년 2월.

14) 정형수, "독자투고의 현상학", 신문연구(관훈클럽),1979년 봄.

15) 윤임술, 신문과 언론인의식 (한국신문연구소), 1981.

16) 이순효, 신문의 지면평가제도에 관한 연구-한·미·일 삼국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논문, 1981.

17) 이경원, 한국에 있어서의 액세스권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논문,1983.

18) 이영미, 독자투고와 게이트키퍼에 관한 연구-중앙일보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논문. 1983.

19) David L. Grey and Trevor R. Brown, "Letters to the Editor : Hazy Reflections of Public Opinion", Journalism Quarterly,1970,47 : pp.450~456, 471.

20) Barron, 전게서 (Freedom of the Press), pp.45~47.

21) 상게서, pp.50~51.

22) 상게서, p.51.

23) 정형수, 전게서, p.333.

24) 이순효, 전게서, p.76.

25) 한국신문연구소 편집부, 전게서, p.51.

26) Barron, 전게서 (Freedom of the Press), p.49.

27) 이경원. 전게서. p.77.

28) Barron, 전게서 (Freedom of the Press), p,49.

29) 이경원, 전게서, p.74.

30) 최종수, 한국신문편집론(서울 :총화각, 1980), p.210.

31) Barron, 전게서 (Freedom of the Press), p.49.

32) 이경원, 전게서. p.74.

33) Grey and Brown, 전게서. p.451.

34) 언론중재, 1982 년 여름. pp.116~117.

35) 조순환, "아키노사건보도와 프리랜서". 신문과 방송, No.153, 1983 년 9 월, p.51.

36) Daniel, 전게서, p.85.

37) 팽원순, 전게서, P.83~84.

38) Daniel, 전게서, p.88.

□ 한국외국어대학교, 미국오하이오대학교(커뮤니케이션학박사)

□ 논문: 「거짓말 형태」 외 다수

□ 현재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